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5
----------	-----

2023. 3. 24.(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호경 의원 등 8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2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3월 16일

-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재발생 시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직접적인 화상보다 유독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등의 흡입에 의해 의식을 잃어 대피하지 못하여 발생하며, 젖은 손수건 등을 통해 유독가스 흡입으로부터 코와 입을 보호한 채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누구나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가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확대함(안 제3조)
 - (현행) 공공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 (변경) 공공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3. 검토보고 요지 (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연마스크 비치 기관 및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민안전 확보 차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기타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23. 3. 8. ~ '23. 3. 1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등에서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누구나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방연마스크 비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소관부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대한 홍보와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 도민” 을 “충청북도민”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 을 “충청북도민” 으로, “시설” 을 “기관 및 시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료기관” 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중전의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제4조 중 “제3조의” 를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으로, “충청북도” 를 “도” 로, “시설 및 기관” 을 “기관 및 시설” 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충청북도</u> <u>도민</u>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p> <p>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u>도민</u>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u>시설</u>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 ----- ----- <u>충청북도민</u> ----- ----- ----- -----.</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 ----- <u>충청북도민</u> ----- ----- <u>기관 및 시설</u> ----- ----- -----.</p>

1. (생략)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시설 중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
--

제4조(예산지원) -----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
-- 도----- 기관 및 시설 -

-----.

<삭제>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3. 22., 2020. 5. 26.>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9. 4. 2., 2021. 12. 7.>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하 생략>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대상시설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사유에 해당함.